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목개정 2023. 9. 20.]

제정 2021. 3. 15.

개정 2022. 8. 31.

개정 2023. 9.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과기연’이라 함)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학생연구자”라 함은 연구원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과기연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재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가.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나. 수료생 중 소속대학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 다.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과정 중에 있는 자
2. “연수책임자”라 함은 과기연에서 학생연구자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과기연의 의무) 과기연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3. 9. 20.>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안

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 유용(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8. 31.>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관리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수책임자의 의무) 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3. 9. 20.>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학생인건비유용(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3. 9. 20.>

1. 연수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수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수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관리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4. 인사 및 복무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과기연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 및 근로계약 위반 시 책임부담 <개정 2022. 8. 31.>

제6조(연구환경 조성) 과기연은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1., 2023. 9. 20.>

제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책임자는 전년도 활용 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목개정 2023. 9. 20.]

제8조(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및 변경) ① 원장과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별표 제1호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과기연과 학생연구자가 학생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08. 31., 2023. 9. 20.>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② 원장과 연수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조 제1항의 연구참여확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1., 2023. 9. 20.>

1. 연수책임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할 과제의 협약체결, 변경, 중단, 해약 등으로 연구참여 확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학생연구자의 학적변동, 개인사정 등으로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이 변경되어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본 연구참여확약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생연구자 및 연수책임자가 서명하고, 학생연구자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가 접수하는 것으로 체결을 갈음한다. <개정 2023. 9. 20.>

제9조(업무범위 제한)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학생연구자를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31., 2023. 9. 20.>

제10조(학업·연구권 보장)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11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수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1., 2023. 9. 20.>

제3장 학생연구자의 처우

제1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31., 2023. 9. 20.>
[제목개정 2023. 9. 20.]

제13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과기연은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인건비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 9. 20.>

제14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목개정 2023. 9. 20.]

제4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15조(통합관리계정 설정) 과기연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수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과기연은 연구참여확약서 및 연수허가신청서 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개정 2022. 8. 31., 2023. 9. 20.>
②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2023. 9. 20.>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과기연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자체점검) 과기연은 이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자체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1.>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19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과기연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20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21조(안전 보장) 과기연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8. 31., 2023. 9. 20.>

제22조(학생인건비 유용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기연과 연수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과기연 또는 연수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기연 또는 연수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8. 31., 2023. 9. 20.>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과기연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과기연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25조(처벌·제재) ① 학생연구자는 연수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수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수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학생연구자 관리부서, 감사부서 등 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③ 과기연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

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6장 보 칙

제26조(준용규정) 학생연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기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20.>

부 칙 (2021.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과정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주제 및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단위 학생인건비 총지급액 및 지급률

계 정	계정책임자	지급총액	지급개월수	*월평균지급률
			연구참여기간과동일	

*월평균지급률 = 월평균지급액(지급총액/지급개월수)/기준금액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21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1인 1계좌)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계정책임자

연수책임자/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 (서명 또는 인)